경제개발구의 본질과 구분

강 정 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원산지구와 칠보산지구를 비롯한 나라 의 여러곳에 관광지구를 잘 꾸리고 관광을 활발히 벌리며 각 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 는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특색있게 발전시 켜야 합니다.》

력사적인 2013년 3월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주체 102(2013)년 5월 29일 정령 제3192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을 제정공포하였다.

경제개발구법은 경제개발구의 창설, 개발, 관리운영 및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무역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지니게 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제한 법규범의 총체이다.

경제개발구라고 할 때 그것은 특수경제 지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특수경제지대는 경제무역활동질서가 국 내의 다른 지역과 달리 설정된 지역이다. 다 시말하여 해당 나라가 일정한 지역에 구획 을 갈라놓고 거기에만 적용되는 법과 규정 들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출입 및 경제무역 활동 등의 여리 측면에서 특혜와 편의가 보 장되는 지역을 특수경제지대라고 한다.

특수경제지대의 명칭을 나라마다 각이하게 부르고있다. 실례로 중국에서는 《경제특구》, 방글라데슈에서는 《수출가공지대》, 아일랜드와 리베리아에서는 《자유공업지대》 또는 《자유수출지대》, 아랍추장국련방에서는 《자유지대》, 메히꼬에서는 《마낄라도라》, 스리랑카에서는 《투자촉진지역》, 영국에서는 《도시기업촉진지대》로 부르고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3 500여개의 경제특구가 130여개의 나라와 지역들에서 창설, 운

영되고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만 하여도 6 600여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나라마다 각이한 명칭으로 불리우고있지 만 특수경제지대는 해당 나라의 주권이 미 치는 곳이면서도 법률적 및 제도적측면에서 일정하게 독자성을 가지고있고 생산과 소비, 류통의 모든 재생산고리들이 시장경제법칙 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교통운수를 비롯하 여 금융, 동력, 통신 등 생산 및 류통의 발 전과 관련되는 부문들이 집중되여있고 외국 투자기업을 위주로 하여 경제가 운영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이다.

1980년대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한 특수 경제지대는 오늘 많은 나라들에서 지역경 제와 국제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공간으 로 리용하고있다.

특수경제지대를 통하여 발전된 나라들에서는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독차지하고 기업들이 원료원천지에 접근하여 낮은원가를 가지고 보다 큰 리익을 얻으려 하고있으며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부족한 자금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나라의 앞선 기술을 리용하여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려 하고있다.

오늘 세계경제는 지식경제시대에 들어서 고있으며 그에 맞게 제조업중심의 특수경제 지대들에서는 각종 우대 및 특혜조치들을 축 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지역의 전문화전략 을 통하여 공업과 봉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첨 단산업지구로 방향을 전환시키고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점차 적으로 떨어지는 대신 봉사위주의 경쟁력이 강화되고있는것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산업지구형태의 생산중심형특수경제지대 로부터 지식을 토대로 하는 고도의 정보기 술, 생물공학 같은 특정화된 특수경제지대 로 이전하는것이 오늘 특수경제지대의 발전 추세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이다.

경제개발구는 우선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과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이다.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과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개발구의 가장 큰 법률적특징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특수경제지대라고 하면 거기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법과 규정을 가지고있으며 물리적인 장벽을 구축하고있다. 대표적인 곳이 1948년에 창설되여 《라틴아메리카의 홍콩》이라고 불리우는 빠나마의 골론자유무역지대이다. 빠나마정부가 취한 법적조치에 따라 일반주민들은 자유무역지대에 마음대로 거주할수 없고 출입시에는 정부가 특별히 제정한 중명서를 휴대하고 세관의 엄격한 검열을 받아야 한다.

자유무역지대에서의 경제무역활동은 물리적인 장벽으로 둘러막힌 상태에서 진행된다. 자유무역지대에서 물리적인 장벽을 구축하는것은 법규의 적용범위를 명백히 하고 민족산업을 보호하며 밀수, 밀매행위를 막자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경제개발구는 또한 경제활동에 특혜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경제활동에 특혜를 적용하는것은 경제 개발구자체의 특성과 관련된다.

나라마다 경제개발구를 창설하는 주요 한 목적의 하나가 그를 통하여 국가의 수 입을 늘이자는데 있다.

경제개발구를 통한 국가의 수입은 외국투자가들에게 주는 특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경제개발구에서 외국투자가들에게 특혜를 준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그들에게 경제무역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는것을 말한다. 경제무역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주면 줄수록 경제개발구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게 되고 외국투

자가들이 얻게 되는 수입이 많아지면 질 수록 국가에 바치는 세금도 그만큼 많아 지게 된다.

주의할것은 우대 및 특혜를 무턱대고 외국투자가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지 않는것이다. 잘못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국가의 리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나라마다 경제개발구를 창설하는것은 민 족산업을 보호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앞선 과학기술과 선진적인 기업관리경험을 받 아들이자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외국투자가 부족되는 자금문제를 해결하고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일수 있는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위험성도 크다. 그것은 외국투자가 대부분 앞선 기술과 기업관리경험을 전제로 하기때문이다. 민족산업이 그와 경쟁력을 가진다면 별일없겠지만경쟁력이 부족하거나 없다면 외국기업에 먹히울수 있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는 자기나라의 일정한 지역을 특수경제지대로 설정하고 물리적인 장벽을 구축한 다음 거기에 외국투자가들이 들어와 경쟁적으로 경제활동을 벌리도록 하고있다.

문제는 국가가 경제개발구에 투자할것을 요구한다고 하여 외국투자가들이 저절로 거기에 투자하는것은 아니다.

외국투자가들은 될수록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한 투자를 중시한다. 그것은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소비대상이 많아지고 그만큼 리윤의 폭이 커지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외국투자가들이 경제개발구에 투자하도록 하자면 경제무역활동조건을 다른 지역보다 더 유리하게 설정해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특수경제지대라는 표현은 사회주의헌법에 의하여 명명된것이다. 사회주의헌법 제37조에는 국가가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여기서 특수경제지대라는 개념은 외국 투자관계의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에서 정 의되였다. 외국인투자법 제2조 10호에는 《특수경제지대란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 규에 따라 투자, 생산, 무역, 봉사와 같은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지역이다.》 라고 규제되여있다.

이 정의는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 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 장되는 특수경제지대이다.》라는 경제개발 구법 제2조의 규제내용과 같다. 차이가 있 다면 경제개발구법에서는 《경제활동》이라 고 규제하였지만 외국인투자법에서는 《투 자, 생산, 무역, 봉사와 같은 경제활동》이라 라고 구체화하여 표현한것이다.

경제개발구를 기능과 부문, 관리소속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기능에 따라 경제개발구를 종합형의 경 제개발구와 전문형의 경제개발구로 구분 할수 있다.

종합형의 경제개발구는 여러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제특구이며 전문형의 경제개발구는 한두가지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제특구이다.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 함경북도청진경제개발구, 량강도 해산경제개발구가종합형의 경제개발구에 속하며 자강도 위원공업개발구, 강원도 현동공업개발구, 함경남도 흥남공업개발구, 함경남도 북청농

업개발구, 함경북도 어랑농업개발구, 황해 북도 신평관광개발구와 함경북도 온성섬 관광개발구, 황해북도 송림수출가공구, 남 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가 전문형의 경제 개발구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부문에 따라 경제개발구를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로 구 분할수 있다.

자강도 위원개발구, 강원도 현동개발구, 함경남도 흥남개발구가 공업개발구이며 함 경남도 북청개발구, 함경북도 어랑개발구 가 농업개발구이다. 그리고 황해북도 신평 개발구와 함경북도 온성섬개발구가 관광 개발구이며 황해남도 송림개발구, 남포시 와우도개발구가 수출가공구이다.

관리소속에 따라 경제개발구를 지방급의 경제개발구와 중앙급의 경제개발구로 구분할수 있다.

여기서 관리소속이란 해당 개발구를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번에 공포된 13 개의 경제개발구는 모두 도(직할시)에 소속되여있기때문에 지방급의 경제개발구라 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경제개발구의 본질과 구분에 대한 리해를 바로 가지고 그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경제개발구를 통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더 많은 연구성과를 내놓아야 할것이다.